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23. 11. 28.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에 조사기획총괄과장을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63호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2023년 12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사기획총괄과장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 2. (생 략) <신 설> 3. 방송기반총괄과장 4. 정책홍보팀장 ④ (생 략)	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2. (현행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같음) 3. 조사기획총괄과장 4. 방송기반총괄과장 5. 정책홍보팀장 ④ (현행과 같음)